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442.2- <i>12</i> (전화번호723-4904)	전결 규정 국 장	4 조 1 항 전결 사항
처리기간	<i>12</i> 시 장		
시행일자	83. 11.		
보존연한	영 구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협 조	병무담당관 심사관
	도시계획과장 <i>[Signature]</i>		
	지역계획계장 <i>[Signature]</i>		
기안책임자	송현섭	83. 11. 25	<i>고시제 648호</i>

경유수신참조	과 안 함 조	발신	시 장
			

제 목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실효 및 결정고시

( 제 1 안 )    내부 결 제

1.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공공지)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법 제74조 제1항 제12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실효, 재결정 및 신설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의 안과 같이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안은 건설부고시 제426호(77.12.9)로 결정된 후 도시계획법에 정한 지적승인 시행기간인 2년째 고시 미이행으로 실효된 동작구 대방동 414-29소 재 대방제1공원과 강동구 잠실지역 아파트 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발생된 체비지를 주거환경 보호와 주민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도시계획실효와 동시에 재결정 및 신설 결정토자 하는 것으로서 3. 이관 법 제16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농합공고 및 의견청취를

거쳐, 제5차(83.9.23)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된 공원 및 공공공지 계획입니다.

첨부 : 1. 관계도면 각 1부.

정서  
*[Signature]*  
판인  
발송

2.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안 과 1부.

( 제 2 안 )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312-1-312  
 답답간 ( )  
 결결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결정

1. 서울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같은법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실효 및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등각구청 및 강동구청 시민봉사실과 해당 동사무소에 두고서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9. 11.

서울특별시장 업 보 현

가. 도시계획시설 실효 조서

구분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실효면적	비 고
실효	어린이공원	대방제1	등각구 대방동414-	1,744 <sup>m<sup>2</sup></sup>	동시제결정
		공원	29		

· 실효일자 : 77. 12. 9 건설부고시 제426호 결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달의 다음날인 79. 12. 9

· 실효사유 :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지적승인

및 도면작성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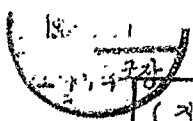
· 실효도면 : 아래 "나"항의 결정도면과 같으므로 그와 가름함.

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결정	어린이공	대방제1공원	등각구 대방동414-	2,950	
	원	원	29		
	공공공지	신천동	강동구신천동11-5	1,009.5	
	공공공지	공공공지			

· 결정도면 : 별첨(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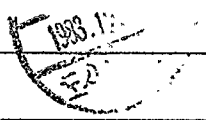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국장

제목 동 건



1. 저희 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별첨 고시 도시와 같이  
실효 및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도서 사본 각 1부.

(제4안)

수신 동장, 강동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목 동 건

1. 귀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첨같이 실효, 및 결정하고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 도서 사본을 송부하니 일반인  
에게 보이고 관계 도면정리 및 결정효력기간내 지적승인 하는 등 도시계획사  
무에 틀림없기 바랍.

첨부 : 1. 고시도서 사본 각 1부.

(제5안)

수신 시설기획과, 공원과, 주택기획과, 건축지도과장.

제목 동 건

1.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하여 실효 및 결정을 별첨과 같이 고  
시하고 알려드리니 관련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도서 사본 각 1부.

(제6안)

수신 총무처장관 (시:공보관)

발신 : 시(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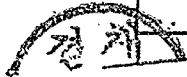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관(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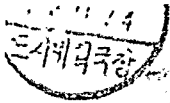
나. 게재건명 : 서울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결정

다. 게재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4조 규정

첨부 : 1. 고지본 사본 2(1)부. 끝.







183. 9. 23

도 시 계 획 위 원 회 회 의 례  
===== (183. 제 5 차 본 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1. 일 시 : 1983. 9. 23 13:00

2. 장 소 : 소회의실

3. 안 건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외 건

4. 참석위원 : 위원장 이상연

위원 이광토

" 김형만

" 신동호

" 김 원

" 이동배

" 여흥구

" 안상영

" 최종무

" 김인동

" 이 동

" 이천수

" 장현위

간 사 도시계획과장

서 기 도시행정계장

5. 불참위원 : 위 원 김안계

" 오희영

" 도철웅

" 김진호

6. 기타참석 : 시설계획과장, 한강개발부장, 재개발과장, 구획정리과장, 철도청건설과장, 문공부 진흥과장.

제 1안	도시 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보문어린이공원 변경</u></li> <li>◦ <u>대방제 1 어린이공원 결정</u></li> </ul>	가 결 "
제 2안	도시 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 및 변경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동공원 결정</u></li> <li>◦ <u>정동녹지 매지</u></li> </ul>	가 결 "
제 3안	<u>도시 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u>	가 결
제 5안	도시 계획시설(도로, 하수도 관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7개로선</li> <li>◦ 하수도 5개선</li> <li>◦ 광장 14개소</li> </ul>	가 결 " "
제 6안	도시 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결정	가 결
제 7안	도시 계획시설 (철도) 결정	소위원회위임
제 8안	도시 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학교) 결정 및 변경	"
제 19안	" (운동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촌동 산 77-8일대</li> </ul>	소위원회위임
제 20안	도시 계획시설(운동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마경기장</li> </ul>	소위원회위임
제 4안, 제 9-18안, 제 21-30안		소위원회위임



회 의 진 행 상 황 -

간 사      상원보고 (생략)

위원장    제 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    회      국민의례

위원장    인사말 (생략)

간사는 보고하시오

간 사      제 4차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의함)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등      동의 (원안접수)

위원장    간사는 제 5차위원회 상정안건을 보고하시오

간 사      제 5차위원회 상정안 총괄 보고 (생략)

제 5차위원회 심의진행순서 보고 (생략)

다음은 심의안 순서에 의해 안건별로 보고 및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안)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

○ 보통 어린이 공원 변경

간 사      제안설명 (심의안대로 설명)

김원위원    공원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간 사      공원일부에는 시설이 되어있으나 빠져하고 자하는 대상 토지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    가급적이면 기화보된 공원은 보존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는 부득이한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    등      동의 (가결)

간 사 제안설명 (심의안대로 설명)

일 동 동의 (가결)

(제 2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 및 현행 결정

간 사 제안설명 (심의안대로 설명)

이광노 위원 서울시의 입안취지에 찬성합니다

~~위원 장~~ 현재와 같이 공적공지로 보존하는 데는 어려움이  
아로 사항이 많아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공원으로 부  
고 자합니다.

일 동 동의 (가결)

(제 3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간 사 제안설명 (심의안대로 설명)

일 동 동의 (가결)

(제 5안)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 광장) 결정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대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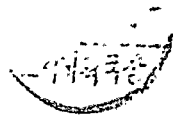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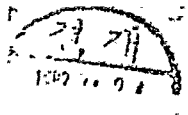
한강개발부장 보충설명 (개발기본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  
- 조감도에 의해 보고)

위원 장 급한 용무관계로 회의진행은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사다면 이광노위원이 하도록 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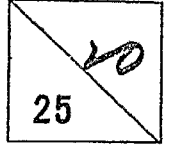
일 동 동 의

위원 장 (대리 이광노위원 이하같은) : 한강개발기본 계획에 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 위원 입체 교차시설 계획은 바람직합니다. 고수 부지의  
있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외에 자전거 도로 등등  
자전거로도 체육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



1983. 9. 23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안

( 제 5 차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I. '83 제 4 차도시계획위원회결과보고

II. '83 제 5 차도시계획위원회부의안건

1.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및변경결정 .....	5.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및변경결정 .....	9
3.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	13
4.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및변경결정.....	17
5.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광장) 결정 .....	23
6.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변경결정 .....	29
7.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	33
8.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공원, 학교) 결정및변경결정 .....	39
9.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및변경결정.....	43
10.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변경결정.....	53
11.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	57
12.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변경결정 .....	61

의안 번호	제 1 호
의결년월일	1983. 9. 27. (제1회)

의결사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조성 및 토지이용규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결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청
제출년월일	1983. 9. 27.

### 1. 의결 주문

당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보문어린이공원	성북구 보문동 7가 108-1	2,013	1,564	면적 449㎡
신설 및 삭감	대방제1어린이 공원	동작구 대방동 414-29	1,744	2,950	제결정

### 2. 제안 사유

- 보문공원 : 기존 치된 보문동 사무소 노후 청사를 신축  
포자 함.
- 대방제1공원 : 면적 차이로 인하여 미지정승인, 신설된 공  
원을 신설 및 제결정코자 함.

### 3. 기 타

- '63. 5. 28 보문동 청사 신축
- '77. 12. 9 대방 제 1 어린이공원 결정 - '79. 12. 9 신설

####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 가. 공람공고

###### 1) 보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안 : 보문어린이공원 변경~~

○ 일자, 게재신문명 : 서울신문 제 11908호 (83.9.1)

○ 의견청취기간 : '83.9.1 - 83.9.14

○ 공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 2) 대방 제1 어린이공원

○ 도시계획안 : 어린이공원신설

○ 일자, 게재신문명 : 경향신문 (82.2.9)

○ 의견청취기간 : '82.2.9 - '82.2.22

○ 공람장소 : 동구구청도시정비과

나. 제출의견, 처리 : 없음

#### 5.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의견

첨부 : 1) 관련문건

의안번호	제 3 호
의결년월일	1983. 9. 23. (제 1 회)

의  
결  
사  
항

도 사 계 획 시 설 (공공공지) 결 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청
제 출 년 월 일	1983. 9. 23.



### 1. 의결주 문

당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로서

구 분	내 용	위 치	규 모	비 고
신설	공공공지	강동구 신천 동 11-5	1,609.5 m <sup>2</sup>	

### 2. 제안 사유

잠심지역 아파트지구 내의 주거, 환경 보호와 보행자의 통행 및 시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임.

### 3. 기 타

####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 가.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공공용지 결정 (신설)
- 일자 및 게재 신문 : 서울신문, 83. 9. 7
- 의견청취기간 : ~~83. 9. 7 ~ 83. 9. 14~~
- 공람장소 : 도시계획과

##### 나. 의견접수 및 처리상황 (총 0 건 접수)

- 의견 요약
-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반영 여부

#### 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검부 : 1)

2)